

-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 -

## 2019 유공자 도지사 표창 계획 공고

2019년 기술닥터사업에 참여한 협약기관 및 우수 기술닥터(지원인력)에 대한 사기진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

### □ 표창개요

- 일시/장소 : 2019. 12월(예정)/경기테크노파크 중회의실
  - ※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
- 훈 격 : 경기도지사
- 표창대상 : 8(기관 2, 민간인 6)
  - 기 관 : 2개(협약기관 85개 중 2개 기관)
  - 기술지원인력 : 5명(기술닥터 전문인력)
    - ※ 표창 대상 기관과 기술지원인력 소속기관은 겹치지 않음
  - 사 업 유 공 자 : 1명(주관기관)
- 공 적 : 2019기술닥터사업 운영 및 기술애로 해결 지원 유공
- 수여방법 : 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여

### □ 표창근거

- 경기도 포상 조례 제5조(표창장)
-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제3항
-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3조(포상)
  - ※ 세부내용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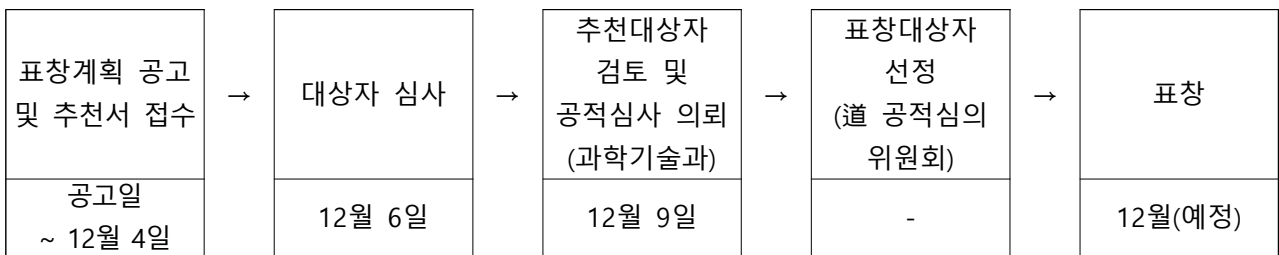
## □ 대상자 선발 기준 및 절차

### ○ 대상자 선발 기준

- 2019년 기술닥터사업 운영 및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지원에 크게 기여한 유공 기관 및 민간인에 대한 시상

⇒ 선의의 경쟁 유도로 인식전환 계기 및 동기부여

### ○ 대상자 선발 절차



### ○ 추천기준(경기테크노파크)

- 기술닥터사업의 참여도 및 기여도, 해피콜을 통한 만족도, 기술 지원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 추천

## □ 추천제한 및 제외대상

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1년, 민간인 3년 이내에 다시 도지사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의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해당공적 3년 미만인 자(특별한 공적 제외)
- 최근 3년 이내 도지사 표창이상 수상자
-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
-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,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
-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

□ 추천서 및 공적조서 제출

○ 추천서 및 공적조서 제출 기한 : **2019. 12. 4(수) 18:00까지**

○ 접수방법 :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

○ 접수처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

(재)경기테크노파크 4동 130호(기술닥터사무국)

※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○ 제출서류 :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, 공적조서 1부, 성공사례 1부

[별첨]

1. 경기도 포상 조례 제5조(표창장)

제5조(표창장 <개정 2011.1.10.>)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1. **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**
2.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
3.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숭선수범한 경우
4.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[신설 2011.1.10.]

2.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제3항

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.

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.

1. 자랑스런공무원표창 : 월 1회
2. 모범공무원표창 : 연 1회
3.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상 : 연 1회
4. 선행도민표창 : 월 1회
5.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민상 : 연 1회

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.

1. 순직공무원표창
2. 도정시책사업표창
3. **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**
4.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3.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3조(포상)

**제23조(포상) 도지사는 연구개발·인력양성·신기술보급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.**